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66호 2018. 9. 3.(월)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 【공 고】

제2018-1476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2
제2018-1481호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	7
제2018-1502호 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68
제2018-1506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1
제2018-1513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5
제2018-1514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95
제2018-1527호 시청사 제2주차장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완료공고 .....	104
제2018-1532호 지적재조사『유통 1지구』사업완료 공고 .....	106
제2018-1544호 공시송달 공고(큰샘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	116
제2018-1556호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17

## 【고 시】

제2018-14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22
제2018-146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124

제2018-147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26

제2018-149호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 128

제2018-150호 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고시 ..... 132

제2018-151호 큰샘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고시 ..... 134

**【공 고】(추가분)**

제2018-1566호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 136

회 람							
--------	--	--	--	--	--	--	--

##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공고 제2018-1476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 및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사항(안 제8조)
-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18. 9. 3. ~ 2018. 9. 28. (25일간)

####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28일까지 공주시장(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98 FAX : 041-840-2323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공주시에 소재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판매 품목 가격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평균가격 이하이며 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청 및 지정)** ① 시장은 신청 방법, 절차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한 선정기준 평가표를 고시·공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공개 모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영업자에 대하여 민·관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고시·공고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평가·지정 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 하되,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및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
3. 고객편의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청결·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고시·공고한 평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용)**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청결·품질·서비스·공공성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체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 공고 제2018 - 1481 호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 **1. 제정이유**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5조)
- 라.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 마.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그 밖에 권리보호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4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월 일까지 공주시장(참조 : 세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세무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우편번호: 32552/전화: 840-8331/FAX: 840-2318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고시·공고란 에서  
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공주시 세무과장(이하“세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과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과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과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

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세무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과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처리결과(의견) 통보서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과장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과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과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과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세자료열람·제출요구서를 세무과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 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및 제9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요구서에 따라 세무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세무과장에게 통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과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결과통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1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조사기간연장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과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간연장통보서를 세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과장은 조사기간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결과통보서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과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연기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18호서식)를 세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과장은 조사연기신청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권리 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 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 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 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23호서 식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제2 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시정요구서에 따라 세무과장 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과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 를 별지 제25호 서식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 관에게 통보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과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세무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과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회보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과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세무과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과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2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세무과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과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과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과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과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세무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과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과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과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과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과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목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고
제1호	고충민원신청서	
제2호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제3호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제4호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제5호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제6호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제7호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제8호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제9호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제10호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제11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제12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제13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제14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제15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제16호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제17호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제18호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결과 통보서	
제19호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제20호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제21호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	
제22호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제23호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제24호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제25호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제26호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제27호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제28호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제29호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제30호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제31호	지방세 기간연장 신청 접수 통보	
제32호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제33호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제34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제35호	지방세 ( ) 기간연장 승인 여부 통지	
제36호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제37호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제38호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제39호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통보	
제40호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제41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신청 접수 통보	
제42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제43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 결정 통보	
제44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등의 처리 결과 통보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약)				
00과 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공주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5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 사 반			조 사 유 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 일간)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의견	승인 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 사유				
	분납기한 및 금액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2회					
3회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J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 (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 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 체납처분유예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 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통보

「공주시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된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일까지	
처리연월일		년 월 일			

##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_\_\_\_\_ (인)

○ 주 소 : \_\_\_\_\_

○ 연 락 처 : \_\_\_\_\_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 공주시 공고 제 2018- 1502호

「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11에 따라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주민 자율감시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정의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절차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6조)
- 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이의신청 및 환수(안 제7조 ~ 안 제9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18. 9. 3. ~ 2018. 9. 27.(24일간)

####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획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예산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840-2028 / FAX : 041-840-2306

#### 4. 참고사항

이 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 공주시 기획담당관실 예산팀 (☎ 041-840-2028)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32552)

☐ FAX : 041-840-2306

## 공주시 규칙 제 호

### 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거나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32조의11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③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통지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 결정)** ①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7제2항의 범위에서 공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포상금 지급절차의 종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이의신청)** 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부터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된 이후 공주시에 접수된 포상금 지급 신청부터 적용한다.

##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공주시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 <input type="checkbox"/> 없음			
④입 금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주시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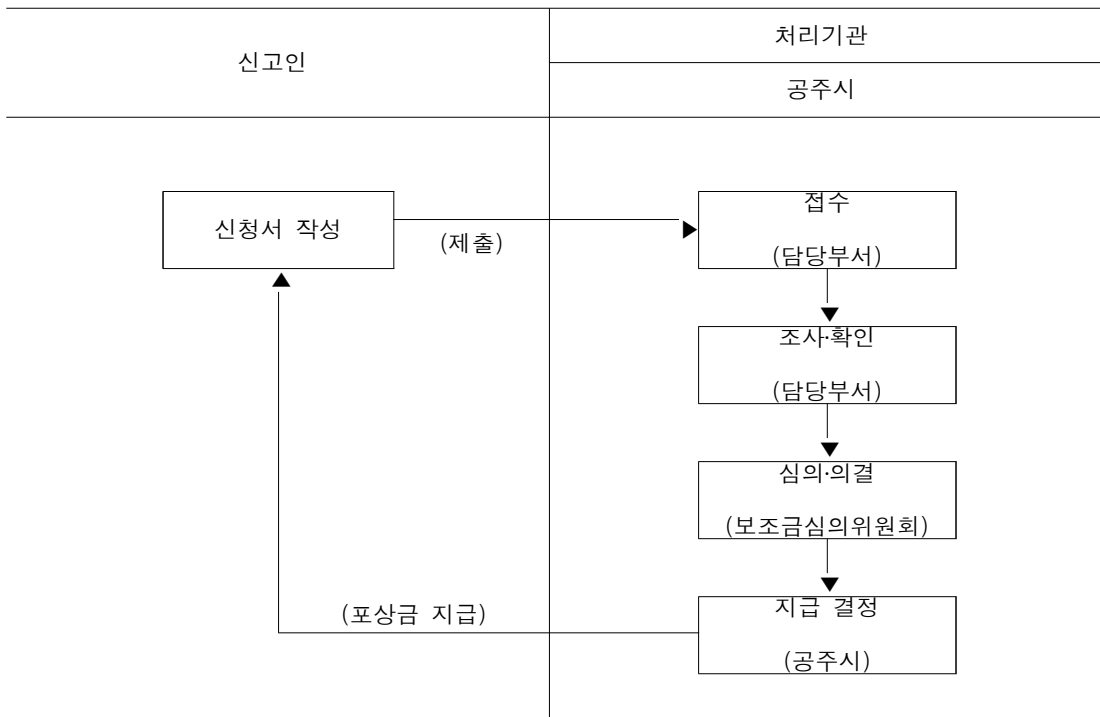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2. 포상금을 수령할 사람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 1. ①란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2. ②란에는 신고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자, 처리결과와 요지를 기재합니다.
- 3. ③란에는 신고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 ]에 ✓를 표시합니다.
- 4. ④란에는 신고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5. ⑤란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 부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공주시장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주시 공고 제2018-1506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기금 존속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상위법 폐지에 따른 관련법 조문 수정으로 경영안정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

#### 2. 주요내용

- 상위법 폐지에 따른 관계법률 수정 (안 제1조 및 제2조 제2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폐지(2016.9.30.)에 따라 관련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 연장(안 제3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기업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주 소: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32552

전 화: 041-840-8292 / FAX: 041-840-2323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조례 제 호

###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2조의 17”로 한다.

제2조제2항 중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2조의 15”로 한다.

제3조제2항 중에서 “2018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p> <p>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u>「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u>에 따라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주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u>「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u>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7.1)</p> <p>제3조(기금의 설치)</p> <p>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18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신설 2014.7.1)</p>	<p>제1조(목적)</p> <p>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u>에 따라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주시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p> <p>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5</u>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4.7.1)</p> <p>제3조(기금의 설치)</p> <p>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2년 12월 31일</u>까지로 한다. (신설 2014.7.1)</p>

## 공주시 공고 제 2018-1513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현행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등을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평생교육의 목적 및 기본원칙 (제1조~제2조)
  - 시민의 학습권보장,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 노력
  - 소속기관, 관계기관·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평생교육실시 권장
- 평생교육진흥사업 명시 및 경비 지원(제3조)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4조~제11조)
  - 평생학습심의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와 일원화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으로 평생교육기관, 단체 간 유기적 협조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제12조~제15조)
  - 평생학습관의 설치와 기능, 평생교육사 배치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제17조~제18조)
  - 평생학습센터 설치, 기능, 인력 및 운영 지원 규정
-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제19조)
- 자원봉사자 모집 · 활용(제20조)
- 평생교육진흥 공로자 포상(제21조)

### 3. 입법예고기간 : 2018. 9. 3. ~ 2018. 9. 27. (24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27일까지 공주시장(교육·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교육체육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393 FAX : 041-840-2319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안)

조례명 : 공주시 평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관계기관·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문자해독·학력보완·직업능력향상·인문교양·문화예술·민주시민참여 교육 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4. 지역·마을·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성과공유 및 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7.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4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협의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자문 요청 사항 협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공주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나. 공주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 2. 위촉직 위원

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운영자

다.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마. 공주시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바.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따라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축제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공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계획 수립·시행·홍보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4.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5. 평생교육 관련 부서,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7.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지원·관리
8.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
9.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인력 배치)**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며, 운영에 필요한 평생학습관장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위탁 관리)**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6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구축 및 활성화 사업
4.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인력 및 운영 지원 등)**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관련 인력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사용료는 금액, 감면 사항 및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관의 기능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설치·운영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공주시 교육체육과에서 기능을 수행 한다.

공주시 공고 제2018-1514호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0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문 인력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필수사항 규정함을 목적

### 2. 주요 조례 개정내용

- 제6조(위탁 운영)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탁기관을 선정
-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 제10조(자체운영규정)
- 제11조(준용)

3. 입법예고 기간 : 2018. 09. 03. ~ 2018. 09. 23.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09. 27.(목) 까지 공주시장(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복지지원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157 FAX : 041-840-2310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 을 “(위탁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 을 “시장” 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중전의 제7조)제3항 중 “시장” 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운영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사용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선정심의회)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정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2

제7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① ·

② (생 략)

③ 그 밖에 프로그램 신청방법  
및 프로그램 종류, 이용료 등은  
시장

<신 설>

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  
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장애인  
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프로그램 이용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시장이 별도  
로 정하여 고시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법 시  
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  
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

제8조 (생략)

<신설>

<신설>

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  
소된 경우

제12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  
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공주시 공고 제2018 - 1527호

## 시청사 제2주차장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완료공고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일원 시청사 제2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 공 주 시 장

1. 위 치 : 공주시 봉황동 3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시청사 제2주차장 조성공사
3. 시행자 : 공주시장(회계과장)

#### 4.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사 업 개 요
도 시 계 획 시 설 (공 공 청 사)	5,864.3㎡	- 주차장 면적 : 3,970㎡ - 주차대수 : 105대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8. 5. 31.

## 6. 준공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5,864.3 (16필지)			
1	봉황동	376-1	학	43,448.5	237.7	교육과학기술부	국	
2	"	372-2	전	1,153.7	1,153.7	공주시	공	
3	"	371-5	대	259.2	259.2	공주시	공	
4	"	371-3	대	176.5	176.5	공주시	공	
5	"	371-2	대	146.1	146.1	공주시	공	
6	"	371-1	대	145.5	145.5	공주시	공	
7	"	366-2	대	1,447.3	452.6	공주시	공	
8	"	319	대	26,786.5	100.0	공주시	공	
9	"	368-1	전	41.3	41.3	공주시	공	
10	"	373-3	대	99.2	99.2	공주시	공	
11	"	373-2	대	264.5	264.5	공주시	공	
12	"	373-4	대	238.0	238.0	공주시	공	
13	"	373-1	대	2,047.9	2,047.9	공주시	공	
14	"	373-8	대	142.1	142.1	공주시	공	
15	"	373-9	대	254.5	254.5	공주시	공	
16	"	371-7	임	128.0	105.5	김공록 외2인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2번길109,802호 (탄방동, 시티빌4차)	

## 지적재조사 『유통 1지구』 사업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유통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27.

###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유통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3. 토 지 소 재 : 공주시 사곡면 유통리 521-3번지 일원
4. 필지수 및 면적 : 종전 235필지(262,902㎡), 확정 241필지(262,337㎡)
5. 지적확정조서 : 붙임참조
6. 공 랐 기 간 : 2018. 8. 27 ~ 9. 10(14일간)
7. 공 랐 장 소 : 공주시청 토지과
8. 관계서류 열람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9. 문 의 처 : 공주시청 토지과 지적재조사팀(☎041-840-8470)

## 지 적 확 정 조 서

번호	총전 토지					확정 토지					면적증감		소유자	비고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증가(㎡)	감소(㎡)		
1	사곡면	유룡리	265	전	2740	사곡면	유룡리	265	전	2740.0	0.0	0.0	이*직	
2	사곡면	유룡리	267	전	1445	사곡면	유룡리	267	전	1445.0	0.0	0.0	이*직	
3	사곡면	유룡리	268	대	311	사곡면	유룡리	268	대	311.0	0.0	0.0	김*숙	
4	사곡면	유룡리	269	대	314	사곡면	유룡리	269	대	314.0	0.0	0.0	황*선	
5	사곡면	유룡리	270	대	568	사곡면	유룡리	270	대	568.0	0.0	0.0	이*호	
6	사곡면	유룡리	270-1	대	239	사곡면	유룡리	270-1	대	239.0	0.0	0.0	이*호	
7	사곡면	유룡리	270-2	대	480	사곡면	유룡리	270-2	대	480.0	0.0	0.0	윤*자	
8	사곡면	유룡리	270-4	대	14	사곡면	유룡리	270-4	대	14.0	0.0	0.0	이*호	
9	사곡면	유룡리	270-5	대	35	사곡면	유룡리	270-5	대	35.0	0.0	0.0	공*시	
10	사곡면	유룡리	271	전	208	사곡면	유룡리	271	전	208.0	0.0	0.0	문*희	
11	사곡면	유룡리	271-1	하천	30	사곡면	유룡리	271-1	하천	31.0	1.0	0.0	공*시	
12	사곡면	유룡리	499	하천	30	사곡면	유룡리	499	하천	30.0	0.0	0.0	곽*묵	
13	사곡면	유룡리	500	하천	23	사곡면	유룡리	500	하천	23.0	0.0	0.0	정*용	
14	사곡면	유룡리	501	전	301	사곡면	유룡리	501	전	253.0	0.0	48.0	공*시	
15	사곡면	유룡리	502	전	60	사곡면	유룡리	502	전	60.0	0.0	0.0	이*철	
16	사곡면	유룡리	503	대	446	사곡면	유룡리	503	대	446.0	0.0	0.0	이*철	
17	사곡면	유룡리	504	대	446	사곡면	유룡리	504	대	508.0	62.0	0.0	김*천	
18	사곡면	유룡리	505	대	807	사곡면	유룡리	505	대	745.0	0.0	62.0	강*중	
19	사곡면	유룡리	505-1	대	1457	사곡면	유룡리	505-1	대	1457.0	0.0	0.0	강*중	
20	사곡면	유룡리	505-2	하천	169	사곡면	유룡리	505-2	하천	177.1	8.1	0.0	공*시	
21	사곡면	유룡리	506-1	답	2621	사곡면	유룡리	506-1	답	2621.0	0.0	0.0	김*희	
22	사곡면	유룡리	506-2	답	579	사곡면	유룡리	506-2	답	579.0	0.0	0.0	김*희	
23	사곡면	유룡리	506-3	답	382	사곡면	유룡리	506-3	답	382.0	0.0	0.0	김*희	
24	사곡면	유룡리	506-4	하천	64	사곡면	유룡리	506-4	하천	61.5	0.0	2.5	공*시	
25	사곡면	유룡리	507	답	2242	사곡면	유룡리	507	답	1650.0	0.0	0.0	밀성박씨 **** 정민중친회 중중	
507-2								답	294.0	밀성박씨 **** 정민중친회 중중				
507-3								답	298.0	밀성박씨 **** 정민중친회 중중				

28	사곡면	유통리	507-1	답	46	사곡면	유통리	507-1	답	44.5	0.0	1.5	공*시	
29	사곡면	유통리	508-1	답	1093	사곡면	유통리	508-1	답	1093.0	0.0	0.0	유*열	
30	사곡면	유통리	508-2	답	260	사곡면	유통리	508-2	답	260.0	0.0	0.0	곽*순	
31	사곡면	유통리	508-3	하천	171	사곡면	유통리	508-3	하천	117.7	0.0	53.3	공*시	
32	사곡면	유통리	509	답	1431	사곡면	유통리	509	답	1210.0	0.0	0.0	남평문씨 **** 중중	
33								509-1	답	221.0			남평문씨 **** 중중	
34	사곡면	유통리	510	답	2268	사곡면	유통리	510	답	2268.0	0.0	0.0	정*녀	
35	사곡면	유통리	511	답	2159	사곡면	유통리	511	답	2159.0	0.0	0.0	오*자	
36	사곡면	유통리	512	답	3063	사곡면	유통리	512	답	4731.0	63.0	0.0	곽*순	
37			513	답	1605								곽*순	
38	사곡면	유통리	512-1	하천	218	사곡면	유통리	512-1	하천	227.4	9.4	0.0	공*시	
39	사곡면	유통리	514-1	답	2026	사곡면	유통리	514-1	답	2080.0	54.0	0.0	김*형	
40	사곡면	유통리	514-2	답	2249	사곡면	유통리	514-2	답	2249.0	0.0	0.0	김*천	
41	사곡면	유통리	514-3	대	542	사곡면	유통리	514-3	대	542.0	0.0	0.0	김*형	
42	사곡면	유통리	514-5	답	5	사곡면	유통리	514-5	답	5.0	0.0	0.0	김*천	
43	사곡면	유통리	514-6	답	50	사곡면	유통리	514-6	답	50.0	0.0	0.0	김*천	
44	사곡면	유통리	515	답	2575	사곡면	유통리	515	답	2575.0	0.0	0.0	문*신	
45	사곡면	유통리	515-6	답	56	사곡면	유통리	515-6	답	56.0	0.0	0.0	총**도	
46	사곡면	유통리	515-7	답	57	사곡면	유통리	515-7	답	57.0	0.0	0.0	문*신	
47	사곡면	유통리	516	답	2716	사곡면	유통리	516	답	2716.0	0.0	0.0	김*원	
48	사곡면	유통리	517-1	답	837	사곡면	유통리	517-1	답	837.0	0.0	0.0	김*원	
49	사곡면	유통리	520-1	답	573	사곡면	유통리	520-1	답	573.0	0.0	0.0	원*식 (외 2명)	
50	사곡면	유통리	520-6	답	160	사곡면	유통리	520-6	답	160.0	0.0	0.0	총**도	
51	사곡면	유통리	521-1	전	489	사곡면	유통리	521-1	전	489.0	0.0	0.0	부안임씨 ****문중	
52	사곡면	유통리	521-3	대	790	사곡면	유통리	521-3	대	790.0	0.0	0.0	유통***회	
53	사곡면	유통리	521-6	참고 용지	697	사곡면	유통리	521-6	참고 용지	697.0	0.0	0.0	유통***회	
54	사곡면	유통리	521-7	대	229	사곡면	유통리	521-7	대	229.0	0.0	0.0	유통***회	
55	사곡면	유통리	522	전	2945	사곡면	유통리	522	전	2945.0	0.0	0.0	김*순	
56	사곡면	유통리	523	전	605	사곡면	유통리	523	전	605.0	0.0	0.0	박*규 (외 2명)	

57	사곡면	유통리	524	전	1818	사곡면	유통리	524	전	1620.0	0.0	198.0	이*직	
----	-----	-----	-----	---	------	-----	-----	-----	---	--------	-----	-------	-----	--

58	사곡면	유통리	525	전	1656	사곡면	유통리	525	전	1013.0	0.0	643.0	윤*호	
59	사곡면	유통리	526	묘지	1749	사곡면	유통리	526	묘지	2392.0	643.0	0.0	윤*호	
60	사곡면	유통리	527	전	132	사곡면	유통리	527	전	132.0	0.0	0.0	김*선	
61	사곡면	유통리	528	전	2350	사곡면	유통리	528	전	2350.0	0.0	0.0	박*원	
62	사곡면	유통리	531	전	2367	사곡면	유통리	531	전	2367.0	0.0	0.0	김*희	
63	사곡면	유통리	532	전	790	사곡면	유통리	532	전	790.0	0.0	0.0	안*희	
64	사곡면	유통리	533-1	전	671	사곡면	유통리	534	전	2757.0	0.0	0.0	이*복	
65			534	답	2086								이*복	
66	사곡면	유통리	533-3	대	933	사곡면	유통리	533-3	대	933.0	0.0	0.0	정*재	
67	사곡면	유통리	533-8	전	981	사곡면	유통리	533-8	전	833.0	0.0	0.0	정*재	
68								533-10	전	148.0			정*재	
69	사곡면	유통리	533-9	전	1960	사곡면	유통리	533-9	전	1425.0	0.0	0.0	정*재	
70								533-11	전	535.0			정*재	
71	사곡면	유통리	535	임야	175	사곡면	유통리	535	임야	175.0	0.0	0.0	김*연	
72	사곡면	유통리	537-1	답	2862	사곡면	유통리	537-1	답	2862.0	0.0	0.0	문*학	
73	사곡면	유통리	538-1	전	1830	사곡면	유통리	538-1	전	1830.0	0.0	0.0	문*화 (외 1명)	
74	사곡면	유통리	539	답	2519	사곡면	유통리	539	답	1392.0	0.0	0.0	김*목외 2명	
75								539-1	답	1127.0			김*목외 2명	
76	사곡면	유통리	540	전	1306	사곡면	유통리	540	전	940.0	0.0	366.0	권*덕	
77	사곡면	유통리	542-1	대	796	사곡면	유통리	542-1	대	726.0	0.0	70.0	윤*만	
78	사곡면	유통리	542-2	대	347	사곡면	유통리	542-2	대	500.0	153.0	0.0	성*심	
79	사곡면	유통리	542-3	대	506	사곡면	유통리	542-3	대	769.0	263.0	0.0	권*덕	
80	사곡면	유통리	543-1	답	3280	사곡면	유통리	543-1	답	3280.0	0.0	0.0	부안** 종중	
81	사곡면	유통리	544	전	374	사곡면	유통리	544	전	374.0	0.0	0.0	곽*순	
82	사곡면	유통리	545-1	전	329	사곡면	유통리	545-1	전	329.0	0.0	0.0	조*숙	
83	사곡면	유통리	545-3	전	832	사곡면	유통리	545-3	전	832.0	0.0	0.0	부안** 종중	
84	사곡면	유통리	546-1	대	278	사곡면	유통리	546-1	대	349.0	71.0	0.0	임*숙	
85	사곡면	유통리	546-2	대	783	사곡면	유통리	546-2	대	783.0	0.0	0.0	서*숙	
86	사곡면	유통리	546-3	대	419	사곡면	유통리	546-3	대	419.0	0.0	0.0	서*숙	

87	사곡면	유통리	546-4	대	886	사곡면	유통리	546-4	대	865.0	0.0	21.0	권*원	
88	사곡면	유통리	546-5	대	466	사곡면	유통리	546-5	대	466.0	0.0	0.0	문*수	
89	사곡면	유통리	546-6	대	803	사곡면	유통리	546-6	대	836.0	33.0	0.0	이*직	

90	사곡면	유룡리	546-7	대	737	사곡면	유룡리	546-7	대	737.0	0.0	0.0	박*순	
91	사곡면	유룡리	546-8	대	255	사곡면	유룡리	546-8	대	298.0	43.0	0.0	김*선	
92	사곡면	유룡리	546-9	대	605	사곡면	유룡리	546-9	대	710.0	105.0	0.0	박*규	
93	사곡면	유룡리	546-10	대	377	사곡면	유룡리	546-10	대	447.0	70.0	0.0	윤*만	
94	사곡면	유룡리	547-3	참고 응지	1419	사곡면	유룡리	547-3	참고 응지	1419.0	0.0	0.0	곽*순	
95	사곡면	유룡리	547-6	참고 응지	57	사곡면	유룡리	547-6	참고 응지	57.0	0.0	0.0	곽*순	
96	사곡면	유룡리	548-1	전	52	사곡면	유룡리	548-1	전	52.0	0.0	0.0	곽*순	
97	사곡면	유룡리	549-1	대	432	사곡면	유룡리	549-1	대	432.0	0.0	0.0	조*라	
98	사곡면	유룡리	549-3	대	713	사곡면	유룡리	549-3	대	713.0	0.0	0.0	김*순	
99	사곡면	유룡리	549-4	대	550	사곡면	유룡리	549-4	대	713.0	163.0	0.0	윤*호	
100	사곡면	유룡리	550-1	목장 응지	1465	사곡면	유룡리	550-1	목장 응지	1465.0	0.0	0.0	오*자	
101	사곡면	유룡리	550-2	구거	159	사곡면	유룡리	550-2	구거	159.0	0.0	0.0	문*규	
102	사곡면	유룡리	550-4	답	82	사곡면	유룡리	550-4	답	82.0	0.0	0.0	문*희 (외 2명)	
103	사곡면	유룡리	551-1	도로	66	사곡면	유룡리	551-1	도로	66.0	0.0	0.0	충**도	
104	사곡면	유룡리	551-2	답	1106	사곡면	유룡리	551-2	답	1106.0	0.0	0.0	박*규	
105	사곡면	유룡리	551-4	답	711	사곡면	유룡리	551-4	답	711.0	0.0	0.0	박*규	
106	사곡면	유룡리	552-1	전	482	사곡면	유룡리	552-1	전	482.0	0.0	0.0	김*희	
107	사곡면	유룡리	553-1	대	288	사곡면	유룡리	553-1	대	377.0	89.0	0.0	박*원	
108	사곡면	유룡리	554	답	93	사곡면	유룡리	554	답	93.0	0.0	0.0	박*원	
109	사곡면	유룡리	555-1	대	600	사곡면	유룡리	555-1	대	600.0	0.0	0.0	문*혁	
110	사곡면	유룡리	555-2	전	843	사곡면	유룡리	555-2	전	843.0	0.0	0.0	박*규	
111	사곡면	유룡리	555-4	전	115	사곡면	유룡리	555-4	전	26.0	0.0	89.0	박*원	
112	사곡면	유룡리	555-7	전	1702	사곡면	유룡리	555-7	전	1702.0	0.0	0.0	문*혁	
113	사곡면	유룡리	556	전	598	사곡면	유룡리	556	전	1216.0	0.0	0.0	박*현	
114			557	전	618								박*현	
115	사곡면	유룡리	559-1	답	1408	사곡면	유룡리	559-1	답	1408.0	0.0	0.0	오*건 (외 2명)	
116	사곡면	유룡리	559-5	답	65	사곡면	유룡리	559-5	답	65.0	0.0	0.0	오*건 (외 2명)	

117	사곡면	유룡리	560	답	2370	사곡면	유룡리	560	답	1086.0	0.0	0.0	오*건 (외 2명)	
118								560-1	답	1052.0			오*건 (외 2명)	
119								560-2	답	232.0			오*건 (외 2명)	
120	사곡면	유룡리	561	전	625	사곡면	유룡리	561	전	625.0	0.0	0.0	조*철	

121	사곡면	유통리	562	대	1273	사곡면	유통리	562	대	1273.0	0.0	0.0	박*규	
122	사곡면	유통리	563-1	대	122	사곡면	유통리	563-1	대	122.0	0.0	0.0	박*래	
123	사곡면	유통리	563-2	답	492	사곡면	유통리	563-2	답	503.0	81.0	0.0	임*숙	
124								563-7	답	70.0			임*숙	
125	사곡면	유통리	563-3	전	3319	사곡면	유통리	563-3	전	2170.0	0.0	300.0	강*식	
126								563-8	전	156.0			강*식	
127								563-9	전	693.0			강*식	
128	사곡면	유통리	563-5	답	228	사곡면	유통리	563-5	도로	228.0	0.0	0.0	임*숙	
129	사곡면	유통리	563-6	답	288	사곡면	유통리	563-6	답	165.0	0.0	123.0	이*원	
130	사곡면	유통리	564-1	대	660	사곡면	유통리	564-1	대	731.0	71.0	0.0	임*숙	
131	사곡면	유통리	564-2	대	248	사곡면	유통리	564-2	대	182.0	0.0	6.0	박*한	
132								564-10	대	60.0			박*한	
133	사곡면	유통리	564-5	전	320	사곡면	유통리	564-5	대	320.0	0.0	0.0	이*원	
134	사곡면	유통리	564-6	답	71	사곡면	유통리	564-6	답	71.0	0.0	0.0	임*숙	
135	사곡면	유통리	564-7	전	1022	사곡면	유통리	564-7	전	933.0	0.0	89.0	이*원	
136	사곡면	유통리	564-8	전	9	사곡면	유통리	564-8	도로	9.0	0.0	0.0	이*원	
137	사곡면	유통리	564-9	답	10	사곡면	유통리	564-9	도로	10.0	0.0	0.0	임*숙	
138	사곡면	유통리	565	대	453	사곡면	유통리	565	대	700.0	247.0	0.0	강*식	
139	사곡면	유통리	566	전	99	사곡면	유통리	566	전	61.0	0.0	38.0	이*직	
140	사곡면	유통리	567	목장 용지	505	사곡면	유통리	567	목장 용지	505.0	0.0	0.0	이*직	
141	사곡면	유통리	567-1	전	1478	사곡면	유통리	567-1	전	1478.0	0.0	0.0	이*직	
142	사곡면	유통리	568	답	2853	사곡면	유통리	568	답	2853.0	0.0	0.0	김*순	
143	사곡면	유통리	570-1	전	331	사곡면	유통리	569	답	6592.0	0.0	0.0	곽*순	
144			569	답	5712								곽*순	
145			570-2	답	549								곽*순	

146	사곡면	유통리	571	답	1802	사곡면	유통리	571	답	3696.0	0.0	0.0	남평문씨 *** 중중	
147			572	답	1894								남평문씨 *** 중중	
148	사곡면	유통리	573	참고 용지	554	사곡면	유통리	573	참고 용지	554.0	0.0	0.0	김*열 (외 1명)	
149	사곡면	유통리	573-1	전	285	사곡면	유통리	573-1	전	285.0	0.0	0.0	김*열 (외 1명)	

150	사곡면	유룡리	573-2	도로	6	사곡면	유룡리	573-2	도로	6.0	0.0	0.0	김*열 (외 1명)	
151	사곡면	유룡리	573-3	전	4117	사곡면	유룡리	573-3	전	4117.0	0.0	0.0	김*열 (외 1명)	
152	사곡면	유룡리	577	전	2489	사곡면	유룡리	577	전	2489.0	0.0	0.0	손*재 (외 1명)	
153	사곡면	유룡리	578	전	694	사곡면	유룡리	578	전	694.0	0.0	0.0	박*규	
154	사곡면	유룡리	579-1	전	1739	사곡면	유룡리	579-1	전	1739.0	0.0	0.0	남*우	
155	사곡면	유룡리	579-2	전	1815	사곡면	유룡리	579-2	전	1815.0	0.0	0.0	남*우	
156	사곡면	유룡리	580-1	답	2625	사곡면	유룡리	580-1	답	4182.0	0.0	0.0	오*자	
157			580-2	답	1557								오*자	
158	사곡면	유룡리	581	전	4569	사곡면	유룡리	581	전	4491.0	0.0	78.0	강*중	
159	사곡면	유룡리	584-1	답	7398	사곡면	유룡리	584-1	답	1598.0	0.0	0.0	문*학	
160								584-2	답	3095.0			문*학	
161								584-3	답	2705.0			문*학	
162	사곡면	유룡리	585-1	전	4172	사곡면	유룡리	585-1	전	4172.0	0.0	0.0	곽*순	
163	사곡면	유룡리	585-2	유지	79	사곡면	유룡리	585-2	유지	79.0	0.0	0.0	곽*순	
164	사곡면	유룡리	585-3	전	10	사곡면	유룡리	585-3	전	10.0	0.0	0.0	곽*순	
165	사곡면	유룡리	586	전	264	사곡면	유룡리	586	전	264.0	0.0	0.0	문*민	
166	사곡면	유룡리	587-1	대	965	사곡면	유룡리	587-1	대	965.0	0.0	0.0	유*화	
167	사곡면	유룡리	587-4	전	1972	사곡면	유룡리	587-4	전	2038.0	0.0	0.0	유*화	
168			587-3	전	40								유*화	
169			587-2	유지	26								유*화	
170	사곡면	유룡리	587-5	도로	25	사곡면	유룡리	587-5	도로	25.0	0.0	0.0	유*화	
171	사곡면	유룡리	588	전	3732	사곡면	유룡리	588	전	3732.0	0.0	0.0	문*민	
172	사곡면	유룡리	588-1	전	1263	사곡면	유룡리	588-1	전	1263.0	0.0	0.0	밀성박씨 .....중종	
173	사곡면	유룡리	593-1	전	1751	사곡면	유룡리	593-1	전	1751.0	0.0	0.0	안*인	
174	사곡면	유룡리	594-1	답	3790	사곡면	유룡리	594-1	답	3790.0	0.0	0.0	박*연	

175	사곡면	유룡리	594-2	유지	422	사곡면	유룡리	594-2	유지	390.0	0.0	32.0	공*시	
176	사곡면	유룡리	595	전	142	사곡면	유룡리	595	전	142.0	0.0	0.0	임*성	
177	사곡면	유룡리	596	답	268	사곡면	유룡리	596	답	268.0	0.0	0.0	반남박씨..... 중종	
178	사곡면	유룡리	610	전	456	사곡면	유룡리	610	전	456.0	0.0	0.0	정*욱	
179	사곡면	유룡리	611	전	1233	사곡면	유룡리	611	전	1233.0	0.0	0.0	박*규	
180	사곡면	유룡리	614	전	182	사곡면	유룡리	614	전	182.0	0.0	0.0	곽*준	

181	사곡면	유통리	615	답	380	사곡면	유통리	615	답	380.0	0.0	0.0	박*규 (외 3명)
182	사곡면	유통리	616	전	774	사곡면	유통리	616	전	774.0	0.0	0.0	한*태
183	사곡면	유통리	617	전	1121	사곡면	유통리	617	전	1121.0	0.0	0.0	임*숙
184	사곡면	유통리	618	답	4291	사곡면	유통리	618	답	5171.0	880.0	0.0	임*숙
185	사곡면	유통리	619	전	1527	사곡면	유통리	619	전	687.0	0.0	840.0	임*숙
186	사곡면	유통리	620	답	3471	사곡면	유통리	620	답	3471.0	0.0	0.0	김*형
187	사곡면	유통리	621	답	2321	사곡면	유통리	621	답	2321.0	0.0	0.0	윤*연
188	사곡면	유통리	622-1	답	1263	사곡면	유통리	622-1	답	1263.0	0.0	0.0	이*문
189	사곡면	유통리	622-2	종교 용지	1000	사곡면	유통리	622-2	종교 용지	1000.0	0.0	0.0	대한불교 *** 덕조사
190	사곡면	유통리	622-4	전	559	사곡면	유통리	622-4	전	559.0	0.0	0.0	공*시
191	사곡면	유통리	622-5	전	1985	사곡면	유통리	622-5	전	1985.0	0.0	0.0	이*문
192	사곡면	유통리	623-1	전	4473	사곡면	유통리	623-1	전	4473.0	0.0	0.0	신**석
193	사곡면	유통리	623-2	전	122	사곡면	유통리	623-2	전	122.0	0.0	0.0	윤*연
194	사곡면	유통리	624	답	56	사곡면	유통리	624	답	146.0	90.0	0.0	임*숙
195	사곡면	유통리	625	답	162	사곡면	유통리	625	답	162.0	0.0	0.0	남평문씨**** 종중
196	사곡면	유통리	626	전	291	사곡면	유통리	626	전	291.0	0.0	0.0	김*묵
197	사곡면	유통리	626-1	종교 용지	645	사곡면	유통리	626-1	종교 용지	645.0	0.0	0.0	남평문씨**** 종중
198	사곡면	유통리	627	전	902	사곡면	유통리	627	전	902.0	0.0	0.0	곽*순
199	사곡면	유통리	628	전	433	사곡면	유통리	628	전	433.0	0.0	0.0	박*규
200	사곡면	유통리	629	전	139	사곡면	유통리	629	전	139.0	0.0	0.0	곽*순
201	사곡면	유통리	630	전	400	사곡면	유통리	630	전	306.0	0.0	0.0	곽*길
202								630-1	전	94.0			곽*길
203	사곡면	유통리	631	전	1514	사곡면	유통리	631	전	1348.0	0.0	0.0	곽*영 (외 1명)
204								631-2	전	166.0			곽*영 (외 2명)

205	사곡면	유통리	631-1	전	757	사곡면	유통리	631-1	전	757.0	0.0	0.0	곽*영 (외 1명)
206	사곡면	유통리	632	대	883	사곡면	유통리	632	대	883.0	0.0	0.0	이*복
207	사곡면	유통리	633	대	1593	사곡면	유통리	633	대	1593.0	0.0	0.0	신*녀
208	사곡면	유통리	634	대	681	사곡면	유통리	634	대	681.0	0.0	0.0	곽*순
209	사곡면	유통리	634-1	참고 용지	631	사곡면	유통리	634-1	참고 용지	631.0	0.0	0.0	곽*순
210	사곡면	유통리	637	답	3223	사곡면	유통리	637	답	3223.0	0.0	0.0	남평문씨 **** 종중
211	사곡면	유통리	638	전	1306	사곡면	유통리	638	전	1306.0	0.0	0.0	부안**종중

212	사곡면	유통리	639	답	2099	사곡면	유통리	639	답	2099.0	0.0	0.0	김*덕
213	사곡면	유통리	640	전	631	사곡면	유통리	640	전	631.0	0.0	0.0	김*경 (외 2명)
214	사곡면	유통리	643	전	1911	사곡면	유통리	643	전	1911.0	0.0	0.0	백*욱 (외 1명)
215	사곡면	유통리	644	답	506	사곡면	유통리	644	답	506.0	0.0	0.0	부안**중중
216	사곡면	유통리	645	전	155	사곡면	유통리	645	전	155.0	0.0	0.0	김*경 (외 2명)
217	사곡면	유통리	646	답	218	사곡면	유통리	646	답	218.0	0.0	0.0	부안**중중
218	사곡면	유통리	647	답	377	사곡면	유통리	647	답	377.0	0.0	0.0	송*미 (외 1명)
219	사곡면	유통리	648	전	688	사곡면	유통리	648	전	728.0	40.0	0.0	정*재
220	사곡면	유통리	649	전	853	사곡면	유통리	649	전	853.0	0.0	0.0	송*미 (외 1명)
221	사곡면	유통리	650	전	1795	사곡면	유통리	650	전	1665.0	0.0	130.0	임*숙
222	사곡면	유통리	651	전	2922	사곡면	유통리	651	전	3238.0	316.0	0.0	정*재
223	사곡면	유통리	652	답	2539	사곡면	유통리	652	전	2324.0	0.0	215.0	정*재
224	사곡면	유통리	653	전	1512	사곡면	유통리	653	전	1567.0	55.0	0.0	정*재
225	사곡면	유통리	653-1	임야	113	사곡면	유통리	653-1	임야	113.0	0.0	0.0	정*재
226	사곡면	유통리	653-2	전	227	사곡면	유통리	653-2	전	227.0	0.0	0.0	윤*호
227	사곡면	유통리	654	전	621	사곡면	유통리	654	전	621.0	0.0	0.0	김*순
228	사곡면	유통리	656	답	93	사곡면	유통리	656	답	93.0	0.0	0.0	김*순
229	사곡면	유통리	659	전	1114	사곡면	유통리	659	전	1114.0	0.0	0.0	고*숙
230	사곡면	유통리	733-11	하천	6573	사곡면	유통리	733-11	하천	5094.0	0.0	1479.0	국 (국토교통부)
231	사곡면	유통리	733-14	하천	13949	사곡면	유통리	733-14	하천	13114.8	0.0	834.2	국 (국토교통부)
232	사곡면	유통리	733-15	하천	3479	사곡면	유통리	733-15	하천	2979.7	0.0	499.3	국 (국토교통부)
233	사곡면	유통리	738-2	구거	342	사곡면	유통리	738-2	구거	226.7	0.0	115.3	국(농림축산식 품부)
234	사곡면	유통리	738-4	구거	1609	사곡면	유통리	738-4	구거	985.3	0.0	623.7	국(농림축산 식품부)

235	사곡면	유통리	738-5	구거	712	사곡면	유통리	738-5	구거	694.2	0.0	17.8	국(농림축산식 품부)
236	사곡면	유통리	749	도로	645	사곡면	유통리	749	도로	855.0	210.0	0.0	국 (국토교통부)
237	사곡면	유통리	752-1	구거	938	사곡면	유통리	752-1	구거	907.6	0.0	30.4	국(농림축산 식품부)
238	사곡면	유통리	753-1	도로	151	사곡면	유통리	753-1	도로	114.5	0.0	36.5	국 (국토교통부)
239	사곡면	유통리	755-1	도로	68	사곡면	유통리	755-1	도로	136.7	68.7	0.0	국 (국토교통부)
240	사곡면	유통리	755-2	도로	58	사곡면	유통리	757-1	도로	646.6	452.6	0.0	국 (국토교통부)
241			757-1	도로	136								국 (국토교통부)
242	사곡면	유통리	756	도로	1537	사곡면	유통리	756	도로	1908.2	371.2	0.0	국 (국토교통부)

243	사곡면	유룡리	757-2	도로	676	사곡면	유룡리	757-2	도로	1250.1	574.1	0.0	국 (국토교통부)	
244	사곡면	유룡리	757-4	도로	782	사곡면	유룡리	757-4	도로	1320.9	538.9	0.0	국 (국토교통부)	
245	사곡면	유룡리	758-1	구거	473	사곡면	유룡리	758-1	구거	181.3	0.0	291.7	국(농림축산식품부)	
246	사곡면	유룡리	758-2	구거	395	사곡면	유룡리	758-2	구거	412.4	17.4	0.0	국(농림축산식품부)	
247	사곡면	유룡리	759	도로	436	사곡면	유룡리	759	도로	559.6	123.6	0.0	국 (국토교통부)	
248	사곡면	유룡리	760	도로	152	사곡면	유룡리	760	도로	321.9	169.9	0.0	국 (국토교통부)	
249	사곡면	유룡리	770	도로	929	사곡면	유룡리	770	도로	1292.6	363.6	0.0	국 (국토교통부)	
250	사곡면	유룡리	771	도로	149	사곡면	유룡리	771	도로	335.7	186.7	0.0	국 (국토교통부)	
251	사곡면	유룡리	772	도로	255	사곡면	유룡리	772	도로	336.0	81.0	0.0	국 (국토교통부)	

#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큰샘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문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큰샘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2. 소 재 지 : 공주시 봉황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4. 공고기간 : 2018. 9. 3. ~ 9. 18.(15일간)
5. 공시송달 목록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	편입 면적(㎡)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비 고
		당초	편입				주소	성명	
토지	봉황동	166	166-1	대	52	52	공주시 큰샘3길 *	김*중	

6.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는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미래도시사업단 창조도시과 도시재창조팀(☎041-840-8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공고 제2018-1556호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관내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공주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협의회의 운영, 회의록 비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노사민정간 협력증진 지원, 성실이행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협의회 수당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본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안 부칙 제1조)
-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를 규정(안 부칙 제2조)

#### 3. 입법예고기간 : 2018. 9. 3. ~ 2018. 9. 28. (25일간)

####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9월 28일까지 공주시장(기업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93 / FAX : 041-840-2323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 ([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근로자 · 사용자 · 주민 · 공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 고용 · 경제 · 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소관 국장 및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사무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사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회회를 대표하고 협회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전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록)** 협회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회회 안전을 검토·조정하고 협회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회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실무협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 ① 시·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은 협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1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양달뜸길 49-13 (주미동)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8.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자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공제정부 주소정합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동 54	충청남도 공주시 주미암탈골길 49-13 (주미동)	2018.08.17	신축	20120907	해당 지번을 명칭할 경우, 다른 지번과 혼동하는 도로 명칭 발생 우려에 명칭을 추가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2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223-44	충청남도 공주시 번영3로 54-12 (신관동)	2018.08.17	신축	20100202	지역특성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변경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3	충청남도 공주시 동천동 1-10	충청남도 공주시 직책로 258 (동천동)	2018.08.17	신축	20100112	고시일 부여일(2012.09.07)과 2014.4.1 일(2012.09.07)의 차이로 2014.4.1 이후 부여된 도로명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4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25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우외실길 5-23	2018.08.17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마를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5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임석리 280-1, 29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서도곡길 88	2018.08.17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마를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6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장산리 310-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상수문길 2-13	2018.08.17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마를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7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57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금배로 1385-7	2018.08.17	신축	20090825	금강과 백제의 아우러짐, 금강과 백제를 통합하는 말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8	충청남도 공주시 개룡면 양화리 257-10	충청남도 공주시 개룡면 보옥고개로 289-38	2018.08.17	신축	20100112	하단~상단을 지나는 도로에 보옥이라는 이름의 고개가 있어 보옥고개이라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9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불곡리 472-3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티고개로 383	2018.08.17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마를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10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신리 306-1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강백내길 174-11	2018.08.17	신축	20100112	도로를 관통하는 마을에 강백내이란 옛 위안이 실었다 하여 강백내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11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화봉리 227	충청남도 공주시 장안면 화봉광장길 146-8	2018.08.17	신축	20100112	화봉리와 화봉리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두 명칭구의 명칭을 통합하여 화봉광장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대신리 757-18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가락골길 152-1	2018.08.17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마를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1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리 52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월산송길 186-15	2018.08.17	신축	20100112	해당 지번마를 명칭을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1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신성리 145-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부곡신성로 686-8	2018.08.17	신축	20090825	행정구역 명칭 활용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1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723-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시로 853	2018.08.17	신축	20100112	마곡시를 향하는 길이라 하여 마곡시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16	충청남도 공주시 신흠면 불간리 324-4, 324-10	충청남도 공주시 신흠면 용수불간길 476	2018.08.17	신축	20100112	용수리의 불간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번의 불간구역 명칭을 통합하여 용수불간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17	충청남도 공주시 신흠면 신흠대리 686, 688	충청남도 공주시 신흠면 청룡샘대길 317-13	2018.08.17	신축	20100112	청룡리와 청산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번의 청룡구역 명칭을 통합하여 청룡샘대길로 부여	고시후 공문발송예정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1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치미마을길 24 (신관동)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사는유후
여부전	여부법	여부전	여부법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에 2018. 08. 17. 고시 법 도로명주소조 제19의거 관계 공조있어거 다니서 주소로 유비기됨용.
- 공공치있거서 리하·있각상고 다에 재종 공사지 주소(소당해)에 변경치있거서 도로명주소로 여부합됨용.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에 건물번호관 여부는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19의거서 정한 절차거 따라 신청할 수 다습됨용.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조 시행령 제7의제7항거 관계 경변 도로명이 고시된 날사터 3년이 해난 법거 여부할 수 다습됨용.

○ 참고사항

- 공동주택관 부우 종전주소관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관 지세주소에 공조있어관 재종 공사지 치당된 주소로 한용.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17.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신촌길 21-3 외 1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8.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공주시 옥룡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고시합니다.

2018년 09월 03일

공 주 시장

###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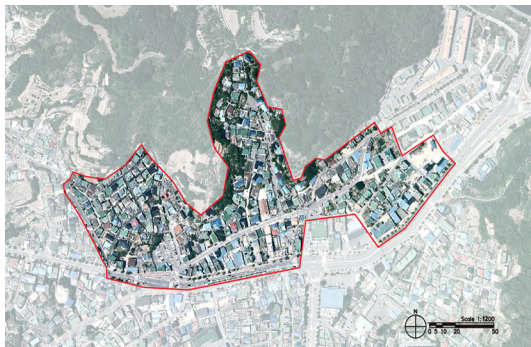
#### 1) 계획의 개요

사업명	유 형	위 치	면적(㎡)	비고
역사를 나누고 삶을 누리는 옥룡동 마을르네상스	근린재생형 (주거지원형)	공주시 옥룡동 버드나무길 일원	93,421	

2) 사업 기간 : 2018년 ~ 2021년

3)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공주시 옥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치】



### 2. 계획의 세부내용

####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내용

- 비전 : 역사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옥룡동 마을르네상스
- 목표 : 생활인프라 개선, 주거정비 지원, 지역특성화, 지역역량강화

##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 - 마중물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주요내용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4,700	공주시, 국토부	옥룡동 생활복지시설 확충
	마을주차장 및 건축불기떨지 도로확보사업	2,500	공주시, 국토부	주차장,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제공
	마을목욕탕 조성사업	400	공주시	마을목욕탕을 조성하여 마을 수익창출
	안심골목길사업	800	공주시, 국토부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동네공유상가 운영사업	500	공주시, 국토부	지역특화 공유상가 운영으로 지역수익 및 일자리 창출
주거 지원 사업	집수리지원사업	500	공주시, 국토부, 주민	노후화된 주택의 외관 재정비로 주거 환경개선
	빈집정비사업	100	공주시, 국토부, 민간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지역경관 개선
	실버-청년임대주택사업	1,200	공주시, 국토부, 공기업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복지증진
지역 특성화 사업	은개골진입도로정비사업	2,000	공주시, 국토부	은개길 주민 진입로 확장
	버드나무 공동체 가로활성화사업	900	공주시, 국토부	버드나무길 가로활성화 공간 조성
	백제테마가로사업	1,000	공주시, 국토부	공산성의 역사문화적 테마를 활용한 테마가로조성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마을축제 특화사업	300	공주시, 국토부	버드나무공동체가로 축제, 백제테마 가로 축제 등 마을축제 운영
	주민역량강화사업	400	공주시, 국토부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기반 구축
	주민공모사업	400	공주시, 국토부	주민 스스로 필요로 하는 사업 시행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000	공주시, 국토부	마을공동체 중심의 지역중심조직 필요

### - 부처협력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주요내용
	공산성 은개골 정비사업	6,300	공주시, 문화재청	공산성 은개골을 정비하여 지역관광명소 조성 및 외부관광객 유입유도
	마을전력기반시설 지원사업	1,000	공주시, 한국전력공사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AMI 구축사업, 공공건축물 태양광사업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	600	공주시, 문체부	옥룡동 지역의 특색화와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	공주시, 행안부	공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 지자체 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주요내용
	공산성 어울림센터토지매입	1,900	공주시	시가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부지 확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700	공주시	옥룡동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 민간투자사업

구분	사업비(백만원)	사업주체	주요내용
자율주택정비사업	2,000	공주시, 국토부, 주민	합의된 집주인들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개량정비
집수리 지원사업	100	공주시, 국토부, 주민	노후화된 주택의 외관 재정비로 주거환경개선
실버-청년임대주택사업	3,800	공주시, 국토부, 공기업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증진

3) 마중물사업 단계별 재원투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계	단계별 재원투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6,700	6,833	4,000	3,000	2,867

※ 재원투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파급효과

1) 정량적지표

- 주거복지지표 :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분리수거함, 택배보관함, 가로등, 보안등, 반사경 등
- 마을일자리지표 : Hare-Ware 사업 고용창출, Soft-Ware 사업 고용창출
- 마을경쟁력지표 : 태양광패널 설치, 사인시스템 설치
- 마을공동체지표 : 주민조직, 주민협동조합 조직 설립·운영

2) 정성적지표

- 주거복지영역 :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실천, 생활인프라 공공공간의 기능회복
- 마을일자리영역 : 지역수익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자리 창출
- 마을경쟁력영역 : 도시기능 강화 및 활력 증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 마을공동체영역 : 서로 공존하고, 소통하는 마을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자립성 향상

4. 도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주차장 : 4개소 73면(마을주차장, 공산성 어울림센터 주차장, 실버-청년 임대주택 주차장)
- 도로확폭구간 : 은개골 진입도로 정비사업 (은개길구간)
- 도로신설구간 : 건축불가필지도로 확보사업 (오동나무2길, 버드나무2길 연결도로)
- 문화시설 : 공산성 어울림센터 1개소
- 복지시설 : 마을목욕탕 1개소

5. 행위 제한 적용지역 : 해당사항없음

## 6.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 1) 정량적 평가 : URMS(Urban Regeneration Monitoring System)활용 모니터링
- 2) 정성적 평가 : 외부평가 자문단 구성(공주시,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7.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 1) 도시재생 전담조직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과 사업계획 추진
  - 2018.04 ~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시까지 운영
- 2) 행정지원협의회
  - 도시재생추진단 및 유관부서의 담당 공무원,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
  - 2018.04 ~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시까지 운영
- 3) 주민협의체
  - 2013년부터 구축된 양질의 공동체 자산 활용
  - 주민,상인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민,상인 등의 공감대와 참여유도
- 4)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총괄지원과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중간조직 역할
  -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로 구성
- 5) 사업추진협의회
  - 다양한 이해 당사자간 의견 수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감대형성 등 이견갈등조정
  - 부처별 T/F팀(도시재생행정협의회)을 구성하여 사업관련 주기적 협의 진행

## 8.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공주시 창조도시과(☎041-840-868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고시

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준공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 공 주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명 칭 : 공주 장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6번지 일원
- 면 적 : 29,53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
- 시행자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4. 준공인가의 내역

- 정비기반시설

##### [ 도로 조성 ]

구분		조성규모	비고
도로 조성	소로3-24호선	▶ B= 6m, L= 62m	

##### [ 주차장 조성 ]

구분	위치	조성규모	비고
주차장-①	공주시 반죽동 186번지 일원	▶ 면 적 : 296㎡ (13대)	

○ 토지등 귀속에 관한 사항

연 번	위 치	소유자	면적 (㎡)		구역명	비고
			지 적	편 입		
1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60-2대	공주시	60.4	60.4	장대지구	
2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60-3대	공주시	43.3	43.3	장대지구	
3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60-4대	공주시	2.1	2.1	장대지구	
4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61-2대	공주시	23.8	23.8	장대지구	
5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61-3대	공주시	12.6	12.6	장대지구	
6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62-4대	공주시	1.9	1.9	장대지구	
7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62-5대	공주시	14.8	14.8	장대지구	
8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0대	공주시	128.8	128.8	장대지구	
9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0-1대	공주시	29.9	29.9	장대지구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1-2대	공주시	46.6	46.6	장대지구	
11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1-4대	공주시	18.9	18.9	장대지구	
12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1-5대	공주시	3	3	장대지구	
13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2-4대	공주시	60.6	60.6	장대지구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5-1대	공주시	44.5	44.5	장대지구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6대	공주시	84.8	84.8	장대지구	
16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6-1전	공주시	38.5	38.5	장대지구	
17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6-2대	공주시	30.9	30.9	장대지구	
18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6-3전	공주시	50.8	50.8	장대지구	
19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7-3대	공주시	12.1	12.1	장대지구	
20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87-4답	공주시	2.6	2.6	장대지구	

5. 기타사항

○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연락처 : 공주시 창조도시과(☎041-840-8647)

## 큰샘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인가고시

큰샘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준공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 공 주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명 칭 : 공주 큰샘B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9-1번지 일원
- 면 적 : 22,18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
- 시행자의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4. 준공인가의 내역

- 정비기반시설

#### [ 도로 조성 ]

구분		조성규모	비고
도로 조성	소3큰샘B-1	▶ B= 6m, L= 75m	
	소3큰샘B-2	▶ B= 6m, L= 91m	

○ 토지등 귀속에 관한 사항

연 번	위 치	소유자	면적 (㎡)		구역명	비고
			지 적	편 입		
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196-1대	공주시	14.5	14.5	큰샘B지구	
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0-10대	공주시	0.6	0.6	큰샘B지구	
3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0-11대	공주시	5.4	5.4	큰샘B지구	
5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1-6대	공주시	11.7	11.7	큰샘B지구	
6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1-7대	공주시	30.4	30.4	큰샘B지구	
7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1-8대	공주시	65.6	65.6	큰샘B지구	
8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1-9대	공주시	12	12	큰샘B지구	
9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2-3차	공주시	92	92	큰샘B지구	
10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3-7대	공주시	26.3	26.3	큰샘B지구	
1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3-8대	공주시	16.9	16.9	큰샘B지구	
1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3-12대	공주시	18.7	18.7	큰샘B지구	
13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3-13대	공주시	1.9	1.9	큰샘B지구	
14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4-2대	공주시	14.5	14.5	큰샘B지구	
15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6-2대	공주시	195.1	195.1	큰샘B지구	
16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6-5대	공주시	197.1	197.1	큰샘B지구	
17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6-13대	공주시	63.8	63.8	큰샘B지구	
18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6-14대	공주시	2.1	2.1	큰샘B지구	
19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7-3대	공주시	30.7	30.7	큰샘B지구	
20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9-1대	공주시	88.4	88.4	큰샘B지구	
21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9-6대	공주시	80.2	80.2	큰샘B지구	
2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09-7대	공주시	12.5	12.5	큰샘B지구	
23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11-3대	공주시	46.7	46.7	큰샘B지구	
24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11-4대	공주시	3.3	3.3	큰샘B지구	
25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16-2대	공주시	4.4	4.4	큰샘B지구	
26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216-4대	공주시	3.4	3.4	큰샘B지구	

5. 기타사항

○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연락처 : 공주시 창조도시과(☎041-840-8647)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3.

공 주 시 장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위치 :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493번지 일원
- 면적 : 164,800㎡
- 사업기간 : 2010년 2월 16일 ~ 2018년 8월 31일(당초)  
2010년 2월 16일 ~ 2019년 8월 31일(변경)
- 시행자 : 대길환경(주) 김기수(당초)  
더블유아이케이환경(주) 김영호(변경)

나. 열람장소 및 시간

- 장소 : 공주시 도시정책과
- 기간 : 2018. 9. 3. ~ 2018. 9. 17.(14일)
- 내용 : 변경내용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다.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라.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마.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시정책과(☎041-840-8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